

1. 개정이유

19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 진료실적 등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한방전공의 수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(안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)

- 1)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서 한방전공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을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준하여 삭제함.
- 2)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진료실적 기준을 환자 주요질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는 하향,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상향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한 의사전문 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 의사전문 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의 병상 수 및 환자 진료 실적의 기준란 중 라목을 삭제한다.

별표 2 제1호의 병상 수 및 환자 진료 실적의 기준란 중 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별표 제2호의 한방내과의 연간 환자 진료 실적란 가목 중 “200명”을 “100명”으로 하며, 같은 란 나목 중 “5천명”을 “3,0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호의 침구과의 연간 환자 진료 실적란 가목 중 “50명”을 “100명”으로 하며, 같은 호의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 실적란 가목 중 “50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호의 한방재활의학과 의 연간 환자 진료 실적란 가목 중 “30명”을 “100명”으로 하며, 같은 란 나목 중 “1,200명”을 “3,00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